

## 憲法改正特別委員會의 憲法改正案起草에 관한 報告

憲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長 蔡 汶 植 議員입니다.

憲法改正特別委員會의 憲法改正案起草에 관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48年7月17日 大韓民國憲法이 制定·公布된 이래 그동안 8次에 걸친 憲法改正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代 國會議員 總選以後 本格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國民의 民主化改憲要求와 이에 따른 與野間의 意見對立으로 술한 우여곡절과 진통끝에, 우리 與·野議員들은 國民 各界·各層의 意見을 收斂, 國民의 興望에 따른 民主發展을 위한 憲法改正案을 早速히 마련하는 것이 政局의 安定과 民主發展에 도움이 된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봄으로써 1986年6月24日 國會 本會議 決議에 의하여 憲法改正特別委員會가 構成되어 우리 모두의 所望인 改憲論議가 始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當特別委員會에서는 1986年7月30日 第1次會議를 열고 委員長과 幹事를 選任하고 憲法內容을 分野別로 區分하여 3個小委를 構成하는등 改憲案起草作業을 爲한 準備를 마쳤으나 野黨側의 拘束者 釋放 및 赦免復權問題의 先決處理主張과 改憲에 관한 公聽會의 會議實況中繼問題등으로 5차례의 會議 밖에 열지 못하고 그 運營이 中斷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與野間에 議院內閣制 政府形態와, 直選에 의한 大統領 中心制 政府形態를 圍繞한 權力構造論爭은 與野間에 不信과 葛藤만 쌓여 信賴와 妥協에 의한 合意改憲案을 마련치 못하고 改憲論議는 사실상 中斷된채 尖銳化한 政治的 對決만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심각한 國論分裂과 社會的 混亂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與黨인 民主正義黨에서 國民和合的 見地에서 野黨의 直選에 의한 大統領中心制 改憲을 受容하는 6.29 宣言으로 合意改憲에 臨하게 됨에 따라 지난 7月 31日부터 最近까지 與野 各 政黨間에 改憲要綱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國會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도 금년 8月 17日 활동을 再開하여 與野合意改憲案을 마련하기 위한 活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當特別委員會에서는 8月 31日 憲法改正案 起草小委員會를 構成하고 與野間에 合意된 改憲要綱에 맞추어 憲法改正案을 起草하여 報告토록 하였고 同起草小委員會에서 起草報告한 대로 9月 11日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는 國民의 直接選舉에 의한 大統領中心制 政府形態를 骨格으로 하는 前文과 本文 130個條 및 附則으로 이루어진 憲法改正案을 起草하였으며 이와같이 與野合意에 의해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起草한 憲法改正案을 오늘 本會議에 報告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起草한 憲法改正案의 改憲方向과 그 趣旨를 간단히 說明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起草된 憲法改正案에서는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고 非常措置權削除등 現行 大統領의 權限을 調整하며 長期執權의 防止를 위한 大統領任期の 單任制를 規定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憲政史의 現實에서 볼 때에 大統領制는 長期執權의 弊端과 獨裁로의 危險을 가져오기 쉬운 制度的 短點을 갖고 있음에도 大體로 國民들이 익숙하고 選好하는 政府形態로 인식되어 있고 大統領은 國民의 直接的인 意思에 따라 直接選出하는 것이 한결같은 國民의 熱望임이 確認되었기 때문에 直選大統領制를 채택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大統領制의 폐단을 防止하기 위하여 大統領의 權限을 調整하여 權威主義的 體制로의 變質을 豫防하고 長期執權의 可能性을 排除하도록 하는데 與野合意의 趣旨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 憲法改正案은 순수한 大統領中心制를 指向하고 三權分立을 철저히 制度化하기 위하여 現行 憲法の 議院內閣制的 要素를 除去함과 아울러 相對적으로 國會의 地位를 強化하여 國會와 行政府間의 權力的 均衡을 이루도록 大統領의 國會解散權과 國會의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議決權을 削除하고, 立法府의 對 行政府 統制機能 遂行의 象徴的 權限이라 할수 있는 國會의 國政監查權을 復活하였으며, 司法府의 獨立을 實質적으로 保障하기 위하여

大法院長 등의 任期를 延長하고 大法官·一般法官의 任命節次를 強化하는 한편 違憲法律이나 政黨解散과 一般國民의 憲法訴願 등을 審判하기 위한 憲法裁判所를 常設獨立機關으로 新設하여 司法府의 政治化를 防止토록 하였습니다.

세째, 이 憲法改正案은 우리 國民의 民主力量이 그동안 크게 成熟된 현실을 直視하여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最大限 伸張토록 하는 데에도 力點을 두었는바, 身體의 自由에 있어서는 國家權力의 濫用으로 因한 基本權 侵害를 防止하고 實質的인 國民의 基本權實現을 위하여 保安處分制度 및 令狀制度를 補完하고, 拘束適否審을 擴大하였으며, 逮捕·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의 告知義務 등을 新設하였고, 政治的 表現의 自由에 屬하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에 있어서는 許可나 檢閱制를 禁止함과 아울러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保障하기 위한 事項은 法律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請求權的 基本權에서는 刑事補償範圍를 擴大하고 刑事被害者에 대한 裁判陳述權과 國家救助制度를 新設하여 刑事被害의 實質的인 救濟에 努力하였고, 社會權的 基本權에 있어서는 勤勞者의 最低賃金制를 實施토록 하고, 主要防衛產業體를 除外한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의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하였으며, 大學의 自律性 保障을 明示하고 기타 環境權의 保障과 國家의 住宅開發政策努力 등의 規定을 新設함으로써 國民의 權利意識과 國民經濟

生活이 크게 發展한 現實에 맞게 基本權伸張을 위하여 努力하였습니다.

네째, 經濟分野에 있어서는 自由市場經濟原理를 根幹으로 하면서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과 適正한 所得分配의 維持, 經濟力の 濫用防止 및 經濟主體間的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해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高度産業社會에서 惹起될 수 있는 階層間·産業間·地域間的 不均衡과 分配問題를 解消하고, 産業의 民主化를 기하도록 하며 特히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保護育成에 관한 規定을 新設補完하여 經濟上의 社會正義實現에 努力하였습니다.

지금까지 國會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起草한 憲法改正案에 관하여 그 改正의 基本方向과 趣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起草된 各 條項別 改正條文은 여러 議員님께 配付해 드린 大韓民國憲法改正案과 改憲案對比表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與野合意에 의해 大韓民國 憲政史上 類例없는 民主化改憲案을 起草함에 있어서 國民의 民主化改革意志를 反映하고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伸張하여 國民으로부터 永久히 支持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憲法改正案을 起草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나름대로 우리國民의 民權鬪爭史 내지 民主化過程의 歷史的 淵源을 갖고 있는 條文 하나 하나에 細心한 注意

를 갖고 소홀함이 없이 起草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當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起草하여 發議된 憲法改正案이 議員 모두의 절대적인 찬성과 온 국민의 지지로 확정되기를 바라며 이 憲法改正案이 民主發展에 礎石이 되고 우리의 後孫들에게 大韓民國憲政史의 새로운 章을 연 憲法으로 永遠히 記憶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